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의결 사항

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(안)

제안자	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
제안연월일	2022. 4. .

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(안)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4. .

제안자 :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

1. 주 문

○ 2021년 전국체육대회 추진과정에서 준공한 시설물의 부실한 하자관리와 예산 낭비 실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「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.

가.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준공에 따른 방수 하자보수 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 하였으나 시공 업체에 하자보수를 이행시키지 않고 시 예산인 시설비를 투입하여 하자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

나. 구미시검도장 준공 후 마룻바닥의 유격 발생 등 하자에 대해 시공 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시설비를 투입하여 개보수공사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

다. 구미시민운동장 육상트랙 준공 후 발생한 트랙시트하자에 대해 아스콘업체와 육상트랙 시트업체간 책임 전가를 빌미로 정확한 하자 원인 규명 없이 시설비를 투입하여 보수 공사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.

라. 전국체육대회 종사자용 근무복 제작에 있어 사이즈 규격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과업 지시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실검수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.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회에서는 구미시에서 개최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추진하면서 준공한 시설물의 부실한 관리와 예산 낭비 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음.
-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는 예산 248억 원을 투입하여 2020. 12월에 준공했으며 2021. 2월부터 복합스포츠센터 1층에서 누수가 차례로 발생.
 - 방수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2023년 12월 22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 없이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시설비(사고 이월분) 6천4백만 원을 부적정하게 투입.
 - 2층 데크의 경우 당초 설계 시 경사도를 주지 않았고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아 우천 시 물이 계속 고여 누수원인으로 판단되어 철거했으며 설계와 시공 및 공사감리에 하자가 있어 보임.
- 구미시검도장 바닥 공사는 구미시민운동장 리모델링공사의 일환으로 2020.12월에 시스템 마루틀 공법을 적용해서 준공했고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검도선수단 연습실로 사용하다가 마루 바닥에 유격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조치 없이 체전기간(2021.7~10월)중 경상북도 전국체전기획단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검도장 바닥이 추가 손상됨.
 - 검도장 특성상 층고가 2.9m 이상 확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현 장소를 고집했고 검도장과 복싱장 바닥공사 시 동일한 관급 자재를 사용했지만 유독 검도장에서만 하자가 발생.
 - 시설비 6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했지만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비(사고이월분) 1억 2천 6백만 원을 투입하여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음.

○ 구미시민운동장 육상트랙의 경우 예산 15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0.12월 준공하였으나 2021.7월 시민운동장 육상 1종 공인 점검 중 시트 들뜸 현상을 최초 발견하여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음.

- 육상트랙 조성 시 아스콘 업체와 트랙 시트 업체가 달라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하자보수 기간 내 임에도 육상트랙 하자보수에 시설비 1천9백만 원을 사용
- 향후 전국 단위 육상 대회 시 선수 부상 위험이 있으며, 육상경기장 제1종 공인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.

○ 전국체전 근무복 제작의 경우 관내 소재 업체와 예산 1억6천만 원 (1벌 기준 78,230원)에 계약했으며 당초 납기일(2021.9.10.)에서 납품 지연 등으로 2021.10.4.로 납품했으나 사이즈 하자와 봉재선 등 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 발생.

- 과업지시서상에는 견본품 3점 이상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계약 체결 시 시제품 제작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전량 제작에 임하며, 반드시 시제품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 부서에서는 견본품과 시제품 미 보관.
- 아울러 납품 후 규격 차이, 불량제품, 착용감 불편 등으로 착용에 부적합 할 경우 해당 물품을 재 납품 하여야 하며 모든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근무복 전량(2,046복)에 대해 재제작을 요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자 보수에 임했으며 근무복 교환은 불과 209벌로 전량 대비 10%에 불과.
- 업체 견적서와 제작된 근무복 안 라벨에는 고어텍스라고 명기돼 있으며 과업지시서상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 수행자는 원단 제조사의 원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원단 확인서 확인 불가.

-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준공한 지 1년도 안 된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의 누수와 구미시검도장 바닥 하자에 따른 개보수공사, 구미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에 대해 하자 보수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시 예산인 시설비(사고이월분)를 추가로 투입해서 하자보수 하였고, 근무복 납품 시 규격(사이즈)하자가 명백히 있었음에도 부실한 검수로 하자보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관리 책임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.